

의안번호	2219029
의 퇴 인	이종배 의원
회 답 일	2026. 5. 28.
추 계 번 호	26F266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경우,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8년 82.3억원, 2030년 82.3억원 등 2028년에서 2030년까지 3년간 총 247.0억원(연평균 82.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법인세 및 소득세, 2028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(안 제8조의5 신설)	-82.3	-82.3	-82.3	-247.0	-82.3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5(납품대금 연동 및 하도급대금 연동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)	○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대금 조정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 - 대상: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※ 법인세 특례를 받는 조합법인과 소득세 및 법인세 추계과세 대상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- 공제율: 대금 조정금액의 15% - 공제한도: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% - 적용기한: 2029.12.31. ※ 미공제금액 발생시 10년간 이월공제 허용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8조의5 (납품대금 연동 및 하도급대금 연동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며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발생한다고 가정
 - 2027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는 2028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8년부터 발생
-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대금 조정금액과 세액공제 발생규모에 대하여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향후 개정안의 세액공제 대상인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대금 조정금액은 최근 2년(2024~2025년)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가정
 - －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3년 7월,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에 시행됨에 따라 2024년 이후 연동 우수기업의 대금 조정실적을 바탕으로 추계
 - ※ 2023년에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(10개사) 및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(6개사)을 선정하였으나, 제도시행 이전의 대금 조정실적이 포함되어 동 추계에서 제외
 - 향후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대금 조정실적은 이월공제 및 공제한도로 인한 차감 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가정
 - － 개정안에 따라 공제대상인 기업은 결손 등으로 미공제금액이 발생할 경우 10년간 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으나, 동 추계에서는 미공제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
 - － 또한, 기업별로 동 제도의 신설에 따른 세액공제가 한도(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%)내에서 발생한다고 가정

- 향후 선정되는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은 조합법인 과세특례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추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
 -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대상과 소득세 및 법인세의 추계과세 대상은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에서 배제됨에 따라 향후 선정되는 공제대상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수령하거나 소득세 및 법인세 추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개정안은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, 대금 조정금액의 15%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
 -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,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
 - 납품대금 연동제¹⁾와 하도급대금 연동제²⁾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 사이에 납품거래나 하도급거래 체결시, 주요 원재료 가격[※]이 일정 기준^{※※}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 대하여 변동분에 연동하여 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서면 약정으로 명시하는 제도
 - ※ 주요 원재료란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의 10%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의미
 - ※※ 10% 이내에서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 비율을 의미
 -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3년 7월부터,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부터 시행
 -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해당 제도의 우수기업을 선정
 - 중소기업벤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부터 매년 12월 각각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
 - 해당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벤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 면제(최대 2년),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벌점 경감,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
 - 개정안은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대해 기존 혜택 외에도

1)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

2)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7항

대금 조정금액의 15%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- 대상: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
 - ※ 단, 법인세 특례를 받는 조합법인과 소득세 및 법인세 추계과세 대상인 기업 제외
- 공제율: 대금 조정금액의 15%
- 공제한도: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%
- 적용기한: 2029.12.31.
- ※ 미공제금액 발생시 10년간 이월공제 허용

(2) 추계방법

□ (대금 조정금액 실적) 최근 2년(2024~2025년)간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대금 조정금액 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2024~2025년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대금 조정금액은 연평균 327.1억원,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대금 조정금액은 연평균 221.8억원 수준

[표 2]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대금 조정금액 실적: 2024~2025년
(단위: 개, 억원)

	2024		2025		연평균 대금 조정금액
	우수기업수	대금 조정금액	우수기업수	대금 조정금액	
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	8	88.1	10	566.2	327.1
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	8	208.8	6	234.8	221.8
계	16	296.9	16	801.0	548.9

자료: 중소기업벤처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

□ (향후 세수효과 추정) 향후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대금 조정금액은 최근 2년(2024~2025년)의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정

- 향후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대금 조정금액은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준(548.9억원)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연간 세수효과: 82.3억원 = 548.9억원 × 15%
 - ※ 이월공제 또는 공제한도로 인한 차감없이 대금 조정금액 전액 세액공제 대상으로 가정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경우,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8년 82.3억원, 2030년 82.3억원 등 2028년에서 2030년까지 3년간 총 247.0억원(연평균 82.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법인세 및 소득세, 2028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(안 제8조의5 신설)	-82.3	-82.3	-82.3	-247.0	-82.3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